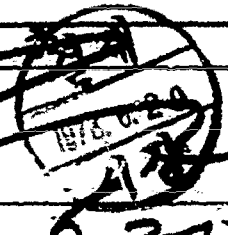




기안용지

부령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181.7-	(전화번호 307)	전경규정 조항	전경사항
처리기간	시			
시행일자	78. 6.			
보존년한				



보조기관	제1부시장	합 조
	기획관리관	
	법무담당관	
기안책임자	김영동	함계지장

경수참	유신조	발신	통제
국안참조			



제목 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(제1안) 내부 결재

주무과발송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(대통령령 제034호 78. 5.30)에 따라 서울특별시 세입금과징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별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1. 개정안 1부
2. 조문 예비 1부
3. 세입 1234-278 (78. 6. 9) 1부: 끝.

훈령제 481호

(제1안)
수신 : 문화공보관
제목 : 시보 게재

발송
본청 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발령할것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481호 1부: 끝.

(제3안)

수신 : 세무 1과장

제목 : 혼령발령

1. 별첨 서울특별시 세입금 주청기관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
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
합 것

첨 부 : 서울특별시 혼령제 호 1부. 끝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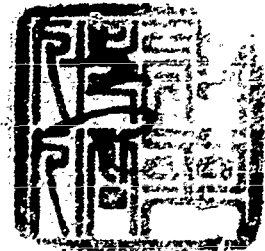
1978. 6월 20일

서울특별시 세입금 추정기관장 공무원의 실적 규정
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

1978 년 6 월 20 일

서울특별시장 구 라



서울특별시 순회제

호

서울특별시 세입부 부장기관부 공무원의 심판부피 및 평가액 산정 규정 개정
서울특별시 세입부 부장기관부 공무원의 심판부피 및 평가액 산정 규정 개정 규율부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중 "세정국장"을 "세무1국장"으로 한다.

제5조 제3항과 제4항중 "재무국장"을 "세무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9034호 : 78.
5.30)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.